

법무매거진



'010' 번호 바꿔준 보이스포싱 공범... 대법원 판단은?

보이스포싱 조직원의 번호를 '010'으로 바꿔준 공범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부터 한달간 해외 보이스포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할 때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월 400만원을 주겠다.”는 보이스포싱 조직의 제안에 따라 서울, 인천 지역의 숙박시설에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조직원의 번호를 정상적인 전화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명으로 된 체크카드나 유심 등을 직원에게 대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설치·이용해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그러나 2심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A씨는 직원들과 공동정범이므로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매개되는 통신의 일방이 기간통신 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의 공범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출처/조선일보)